

공시송달 공고

- 제 목 :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- 기 간 : 2024. 1. 5. ~ 1. 25. (18일간)
- 대 상

성명	주소	부과금액		반송사유
		과태료 (가산금 포함)	의견제출 기간 내 금액(20% 감경)	
장*영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****-**, *층	50,000	-	폐문부재

4. 내 용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(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)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, 수취인부재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 - 위 공고기간 내에 송의2동 행정복지센터(☎ 032-728-6124)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송의2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관할 법원에서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,
 - 기간 내에 이의제기 하지 않고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으면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(최초납부기한 경과 후 3/100, 이후 매1개월마다 12/1000, 최대 60개월)이 부과되며,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5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2동 담당자(☎032-728-6124, 주소: 경인로34번길 20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1월 5일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2동

